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0년 7월 9일

나.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다. 회부일자 : 2020년 7월 9일

라. 상정일자 : 2020년 7월 17일

제24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설명자 : 행정안전국장 김 종 울

나. 제안이유

○ 금오산도립공원 내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42만 구미시민의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고, 현대 사회의 트렌드이자 정부의 핵심 농정혁신과제인 푸드플랜 구축사업에 선제적 대응으로 구미시 먹거리 통합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잔여지 매입 취소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편입되어 맹지가 되는 잔여부지를 토지 소유자의 피해 감소를 위해 매입 계획이었으나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불가로 공영화물 차고지 조성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잔여지 매입 취소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취득재산】

□ 금오산도립공원 내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 위 치 : 남통동 163-1 외 2필지 * 토지 시유지
- 대 상 : 건물 연면적 600㎡(182평)
- 사업기간 : 2020 ~ 2021년
- 사 업 비 : 17억원(국비 5, 도비 1.5, 시비 10.5)
- 주요시설 : 판매장, 편의시설, 사무실, 작업장 등

【취득 취소재산】

□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잔여지 매입 취소

- 위 치 : 오태동 산 27-3번지
- 대 상 : 편입부지 외 잔여지(맹지) 24,837㎡(7,513평)
- 기준가격 : 288백만원

※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 위 치 : 구미시 오태동 산 27-3번지 일원(남구미 IC 인근)
- 기 간 : 2014 ~ 2021년
- 사 업 량 : 43,213㎡
- 사 업 비 : 194억원(국비 136, 시비 58)

라.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박 정 은

○ 본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은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시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2020년도 수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금오산도립공원 내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등 2건임.

○ 「금오산도립공원 내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은

-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7억원(국 5, 도 1.5, 시 10.5)을 투입해 금오산도립공원(대주차장) 내에 연면적 600㎡ 규모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임.
- 당초 계획했던 송정공원에서 금오산도립공원 내로 건립위치를 변경함에 따라 규모는 상당부분 축소되었으나,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로 시민과 관광객의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금요직거래장터와 연계한 구미 농특산물 직거래 거점으로서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을 통해 시민에게는 더욱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고, 지역 농가에게는 유통마진을 최소화한 안정적 판로확보로 소득 증대를 보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잔여지 매입 취소」는

-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일부가 편입되어 잔여지가 맹지가 되는 오태동 산 27-3번지 소유자의 재산상 피해를 감소시키고 향후 공원부지 등으로 활용하고자 제22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잔여부지 매입을 의결하였으나,
- 토지소유자와의 토지이용 협의 불가로 사업계획이 전면 취소됨에 따라 잔여지 매입 또한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